



제418회국회(정기회)
제 7 차 정 무 위 원 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기후 공시제도 도입 등 >

■ 김남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715호)

2024. 11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기후 관련 사항의 사업보고서 기재·공시 의무화	3
2. 지속가능보고서 제출 의무화	11
3. 기후변화 대응계획 등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 의무화	16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남근의원 등 32인
2. 제 안 일 : 2024. 9. 5.
3. 회 부 일 : 2024. 9. 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 위기는 기업의 사업과 재무성과, 주가에 단기·중기·장기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주고 있음.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들이 기업의 기후 위기 대응 능력을 투자 결정 기준으로 삼고, 탄소 배출량이 많은 기업에 투자 철회 압박을 가하는 사례, 기업의 그린 워싱(Greenwashing)에 소비자들이 소송을 거는 사례 등 기후변화 관련 위험에 대응하지 못해 기업의 주가나 가치가 폭락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기업의 경영활동을 평가하는 데 있어 재무적 성과뿐 아니라 비재무적 성과지표로서 기후 관련 기회와 위험에 관한 사항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특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2023년 3월 상장기업의 기후 관련 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기후 관련 위험이 사업 및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거나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단기·중기·장기로 구분한 정보 및 회사의 전략 등을 사업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함. 이외에도 선진국에서는 기후공시에 대한 논의가 활

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또한, 회사의 기후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주주총회에서 권고적 표결의 형태로 주주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심의를 받는 절차인 “Say on climate” 제도를 도입하는 선진국도 증가하고 있음.

이에 사업보고서에 지구 온난화를 촉진하는 요소별 배출량과 총 온실가스 배출량 및 이에 대한 감축 목표를 공개하도록 하며, 대응계획 및 감축 목표에 대한 이행현황과 의사결정구조를 사업보고서에 의무적으로 기재·공시하도록 함. 세이온클라이밋은 주권상장법인에 한정하되, 결의 대상은 회사뿐 아니라 연결종속회사의 기후전략 등을 포함하고 기후전략은 3년마다, 이행현황은 1년마다 주주총회에서 결의하나 권고적 효력만 가지게 함. 또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조의 탄소 중립에 관한 기본원칙에 부합하도록 기후전략을 수립하라고 정하고 있는 바 이에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고자 사업보고서 제출 법인에게 지속가능성보고서 작성 의무를 부과하고자 함. 아울러 기후 대응계획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3년마다 정기주주총회에서 표결 대상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이행현황을 매년 정기주주총회에서 표결 대상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함(안 제159조제2항제4호의2·제4호의3, 제160조의2, 제165조의21 신설)

Ⅲ. 검토의견

1. 기후 관련 사항의 사업보고서 기재·공시 의무화

□ 개정안은 사업보고서 기재사항에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전략 및 기후변화 대응 계획, 감축 전략 및 기후변화 대응 계획의 이행 현황 (이하 “기후 관련 사항”)을 추가하는 한편, 반기보고서에도 이를 준용 하려는 것임(안 제159조제2항제4호의2·제4호의3 신설, 안 제160조).

현 행	개 정 안
제159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① (생략)	제159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제1항의 사업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신설>	4의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이하 “온실가스”라 한다)의 배출량, 온실가스의 감축 목표·감축 전략 및 기후변화 대응 계획
<신설>	4의3. 4호의2에 따른 온실가스의 감축 전략 및 기후변화 대응 계획의 이행 현황
5. (생략)	5. (현행과 같음)
③ ~ ⑦ (생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160조(반기·분기보고서의 제출) 사	제160조(반기·분기보고서의 제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서는
주권상장법인 등으로 하여금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사업보고
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²⁾

-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은 회사의 목적, 상호, 사업내용, 임원보수,
재무에 관한 사항 등 주로 회사의 사업, 소유관계, 재무적 사항 등
으로³⁾, 그 내용에 허위·부실기재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① 주권상장법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사업
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라 한다)은 그 사업보고서를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금융위
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파산,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업보고서의 제출이 사
실상 불가능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보고서를 제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7조(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등) ① 법 제15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
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한 발행인

- 가. 주권 외의 지분증권[집합투자증권과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자산유동화
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을 말한다)이 발행하는 출자지분은 제외한다]
나. 무보증사채권(담보부사채권과 제362조제8항에 따른 보증사채권을 제외한 사채권을 말한다)
다. 전환사채권·신주인수권부사채권·이익참가부사채권 또는 교환사채권
라.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마. 증권예탁증권(주권 또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만 해당한다)
바. 파생결합증권

2. 제1호 외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법 제117조의10제1항
에 따른 모집과 법 제130조제1항 본문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은 제외한다)한 발행인(주권상장
법인 또는 제1호에 따른 발행인으로서 해당 증권의 상장이 폐지된 발행인을 포함한다)

- 가. 주권
나.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대상
법인(해당 사업연도에 처음 외부감사대상이 된 법인은 제외한다)으로서 제2호 각 목의 증권별
로 그 증권의 소유자 수(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500인 이상인 발행인(증권의 소유자 수가 500인 이상이었던가 500인 미만으
로 된 경우로서 제2항제5호에 해당하지 않는 발행인을 포함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②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제1항의 사업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회사의 목적, 상호, 사업내용
- 2. 임원보수(「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3. 임원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임원 개인에게 지급된 보수가 5억원 이내
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 3의2. 보수총액 기준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개인에게 지급된

아니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부과됨.⁴⁾

□ 그런데, 최근 전세계적으로 기업의 경영활동을 평가함에 있어 재무적 성과뿐 아니라 비재무적 성과지표로서 기후 관련 기회와 위험에 관한 정보 공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임.

○ IFRS 재단⁵⁾ 산하의 ISSB⁶⁾는 2022년 3월 일반 및 기후분야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ESG⁷⁾ 공시기준”)에 대한 공개초안을 발표한 후, 의견 수렴을 거쳐 2023년 6월 첫 번째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인 IFRS S1(일반)⁸⁾ 및 S2(기후)⁹⁾ 최종안을 발표하였음.¹⁰⁾

보수가 5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4. 재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8조(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③ 법 제159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59조제7항에 따른 대표이사와 제출업무를 담당하는 이사의 제169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서명

2. 회사의 개요

3.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 및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4. 주주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회사의 대주주(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또는 임직원과의 거래내용

7. 재무에 관한 사항과 그 부속명세

8.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9. 그 밖에 투자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사업보고서 미제출 또는 중요사항 허위기재·미기재 시 「자본시장법」상 제재는 다음과 같음.

• 행정조치(§164): 증권발행 제한, 임원 해임권고, 경고·주의 등

• 손해배상책임(§162): 증권 취득자 또는 처분자에게 손해 발생 시 사업보고서 관련 제출인·이사·작성자·회계사·감정인·신용평가사 등

• 과징금(§429): 전년도 일일평균거래금액의 10%(최대 20억원) 내에서 부과

• 형사처벌(§444, §446):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중요사항 거짓기재 등)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미제출)

5) 국제재무보고기준(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재단, 전세계 약 146개국이 도입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IFRS 회계기준) 등을 제정하는 국제기구

6)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2021년 11월 IFRS재단 산하에 설립된 위원회로,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제정 중

7) “ESG”란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및 지배구조(Governance)를 지칭하는 용어로, 환경 경영, 사회적 책임,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에 초점을 둔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기업 경영의 3가지 요소를 의미함.

8)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기준선 제시

- EU는 상장·비상장 대기업 및 일부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기후공시를 의무화하는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CSRD)를 2025년(2024회계연도)부터 기업의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임.¹¹⁾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는 2024년 3월 기후공시규칙(climate-related disclosures)을 확정·발표하여 모든 상장기업에 대해 기업의 규모 등에 따라 2026년(2025회계연도)부터 법정공시 의무를 단계적으로 부여하였으나, 관련 소송이 제기되어 효력이 일시정지됨.¹²⁾
-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위원회는 2021년 1월 지속가능보고서¹³⁾(한국거래소 공시)를 통해 기후를 포함한 ESG 정보의 자율공시를 활성화하고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다고 발표¹⁴⁾한 바 있으며, 현재 공시 기준, 대상기업, 도입시기 등을 논의하는 단계¹⁵⁾에 있음.
- 그 외에도,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4-3조¹⁶⁾에

9)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공시 요구사항을 제시, S1과 함께 적용되도록 고안

10)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글로벌 ESG 공시규제 강화에 대비하여 ISSB 기준 국문 번역본을 공개합니다.”, 2023.12.26.

11) 한국거래소, “글로벌 ESG공시 논의동향 및 시사점”, 2023.5.

12) 금융위원회 제출자료

13) 환경 관련 기회·위기로인 및 대응계획, 노사관계·양성평등 등 사회이슈 관련 개선노력 등 지속가능경영 관련 사항을 담은 보고서

14)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기업 부담은 줄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기업공시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2021.1.14.

15) 금융위원회는 국내·외 상황을 고려하여 국내 ESG 공시 도입시기를 2026년 이후로 연기하고 기후 분야부터 거래소 공시로 도입하되, 기업 준비상황을 고려하여 대형 상장사부터 도입한 후 단계적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발표(2023.10.)하였으며,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에 대한 공개의견수렴(2024.5.1. ~ 2024.8.30.), 기업간담회(2024.9.19.)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 및 검토 중임.

16)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따라 사업보고서 제출법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17)에 따른
관리업체 및 인증기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지정기업은 환경 관련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공시하여야 하며,

- 녹색기업, 자산총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주권상장법인 등은 「환경
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8¹⁸⁾에 따라 환경정보를 작성·
공개해야 함.

제4-3조(사업보고서등의 기재사항) ① 법 제159조제4항 및 영 제168조제3항제9호에 따라 사업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차.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제6항에 따른 관리업체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온실
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에 관한 사항(「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제6항에 따른
관리업체에 한한다.)

카. 녹색기술·녹색산업 등에 대한 인증에 관한 사항(「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제2항
에 따라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은 법인에 한한다.) 및 녹색기업 지정에 관한 사항(「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2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자에 한한다.)

17) 2021년 9월 24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에 따라 폐지됨.

1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8(환경정보의 작성·공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환경정보를
작성·공개하여야 한다.

1. 제16조의2에 따른 녹색기업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중 최근 사
업연도말 자산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기업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환경영향이 큰 기업

② 제1항에 따라 작성·공개하여야 하는 환경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환경정보는 제외한다.

1. 환경보호, 자원절약, 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 등의 관리(이하 이 조에서 “환경관리”라 한다)
를 위한 목표 및 주요활동 계획

2. 환경관리를 위한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활용에 관한 사항

3. 환경관리 성과에 관한 사항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55조에 따른 녹색경영에 관한 사항

[표1] 국내 기후 및 환경 관련 정보공시 현황

구분	주요내용
사업보고서 공시	- 회사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국내외의 금융, 조세 및 <u>환경 관련 법령</u>과 노동, 소비자보호 및 공정거래 관련 법령상 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현황 <u>온실가스 배출량</u>, <u>에너지 사용량</u> 등 녹색경영 관련 사항 - 사업 관련 환경물질 배출, 환경보호 관련 정부규제 준수사항, 환경개선설비 관련 중요한 자본지출 계획
한국거래소 자율공시	<u>녹색경영정보</u>에 관한 사항: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인증·확인에 관한 사항, 관리업체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에 관한 사항, 개선명령 등 제재조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녹색기업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u>지속가능경영보고서</u> 관련 사항, 온실가스 배출권의 취득·처분 등 녹색경영정보 관련 사항
개별법상 공시	<u>환경정보공개제도</u>에 따른 공시: 녹색경영 시스템, 자원·에너지 및 온실가스·환경오염 관련 관리활동(저감투자, 기술도입)과 관련 성과지표(온실가스 배출량, 재생에너지 사용량 등), 환경법규 위반 현황

(자료: 국회입법조사처)

□ 개정안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게 기후 관련 사항에 대한 사업 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기재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으로, 국내 기업들이 기후공시를 강화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에 대응하여 적응력을 제고하고, 우리나라 경제와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특히, EU 등 해외 주요국들의 기후공시 강화에 따라 앞으로 해당 국가에 상장된 우리나라 기업이 공시규제를 준수할 의무를 부담할 예정¹⁹⁾이라는 점, 향후 기업의 그린 워싱(Greenwashing)²⁰⁾에 따른

19) 한국거래소, “글로벌 ESG공시 논의동향 및 시사점”, 2023.5.

20) 기업이 실제로는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활동을 하면서도 마치 친환경을 추구하는 것처럼

소비자 소송 등의 발생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기후공시를 도입하려는 개정안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공시역량 강화 및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바람직한 입법방향으로 판단됨.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첫째, 개정안에서는 기후공시 의무대상을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어 모든 주권상장법인 등²¹⁾에게 기후공시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공시대상 정보의 경우 그 구체적인 사항을 하위법령에 별도로 위임하고 있지 않아²²⁾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대상기업과 정보 범위의 적정성, 해외의 동향 및 국제기준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개정안을 심사할 필요가 있음.
- 둘째, 국내외 공시제도 도입 및 이행현황과 규제에 따른 기업 부담 등을 고려하여 개정안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금융위원회는 국제적으로 기후를 포함한 ESG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공시 제도화의 움직임이 있으나, 대부분 아직 제도를 마련

홍보하는 것(출처: 환경 용어사전)

21) ① 주권 외의 지분증권, 무보증사채권, 전환사채권·신주인수권부사채권, 이익참가부사채권 또는 교환사채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증권에탁증권, 파생결합증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한 발행인, 주권 및 주권외의 상기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한 적이 있는 발행인, 외부감사대상 법인으로서 증권별로 그 증권의 소유자 수가 500인 이상인 발행인

22) 다만, 재무제표에 단기·중기·장기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가능성이 있는 기후변화 관련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면서, 단기·중기·장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중이거나 시행 예정인 초기단계라는 점²³⁾, 국내의 경우도 ESG 공시 관련 제도를 논의하는 단계로 향후 국내 기업의 준비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또한, 이해관계자인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서도 기업의 과도한 부담 등을 이유로 개정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하였음.

□ 참고로, 현재 우리 위원회에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로 기업의 비재무적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 2건²⁴⁾이 계류 중이므로 이를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음.

2. 지속가능보고서 제출 의무화

□ 개정안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지속가능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지속가능보고서를 미제출하거나 허위공시하는 경우 발행주식 일일평균거래금액 10%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속가능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0조의2 신설, 안 제429조 제3항 및 제446조제28호).

23) 미국의 경우 2024년 3월 기후공시규칙을 발표하였으나 관련 소송으로 효력 일시정지 중이며, 일본의 경우 2025년 공시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며 시행시기는 논의 중인 상황임.

2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① 한민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0738호, 2024.6.20., ② 박상혁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3215호, 2024.8.27.

현행	개정안
<u><신설></u>	<u>제160조의2(지속가능보고서의 제출) ①</u> <u>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각 사업</u> <u>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해당 법인</u> <u>의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 기</u> <u>후 관련 위험 및 기회 등에 대한 정보</u> <u>를 기재한 지속가능보고서(이하 “지</u> <u>속가능보고서”라 한다)를 금융위원회</u> <u>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u> <u>파산,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지속가</u> <u>능보고서의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하</u> <u>거나 실효성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u> <u>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보</u> <u>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u> <u>② 지속가능성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u> <u>지속가능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u> <u>지속가능성 공시기준 등에 따라 금융</u> <u>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재방법</u> <u>및 서식에 따라야 한다.</u> <u>③ 지속가능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u> <u>지속가능보고서에 그 법인의 예측정</u> <u>보를 기재 또는 표시할 수 있다. 이</u> <u>경우 예측정보의 기재 또는 표시는</u> <u>제125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4호</u> <u>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u> <u>④ 제159조제1항 후단, 제6항, 제7항,</u> <u>제161조의2, 제162조부터 제165조까</u> <u>지의 규정은 지속가능보고서에 관하</u> <u>여 이를 준용한다.</u>
제429조(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①· ② (생략)	제429조(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①· ②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③ 금융위원회는 제159조제1항, 제160조 또는 제161조제1항에 따라 <u>사업보고서</u> 제출대상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중에 증권시장(다자간매매 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형성된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일일평균거래금액의 100분의 10(20억원을 초과하거나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59조제1항, 제160조 또는 제161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등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때 2. 제159조제1항, 제160조 또는 제161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④ ~ ⑥ (생략) 제4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27. (생략)	③ -----제160조, 제160조의2-----사업보고서등----- ----- ----- ----- ----- ----- ----- ----- ----- ----- ----- ----- ----- ----- ----- ----- 1. -----제160조, 제160조의2----- ----- ----- ----- 2. -----제160조, 제160조의2----- ----- ----- -----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446조(벌칙) ----- ----- ----- ----- ----- 1. ~ 27.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28. 제159조, 제160조 또는 제161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분기보고서나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8. -----제160조, 제160조의2제1항----- ----- 분기보고서·지속가능보고서----- ----- -
29. ~ 63. (생략)	29. ~ 63. (현행과 같음)

□ 현재 거래소 규정²⁵⁾에 따라 국내 기업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자율적으로 공시할 수 있으나, 일부 대규모 기업만 이를 공시하고 있음.

○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 9월 기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는 기업은 211개에 불과한데, 이 중 대부분이 코스피 기업(197개)이며,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이 절반 이상인 151개에 이르고 있음.

□ 개정안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으로 하여금 사업보고서와 함께 “지속가능성”과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 등에 대한 정보를 기재한 지속가능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책임투자를 활성화하려는 취지임.

○ 현재 기업의 ESG 정보공개는 기업 자율에 맡겨져 있어 경영상의 유·불리에 따라 불완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지속가능보고서

25)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28호 및 시행세칙 제8조제7호,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6조 및 시행세칙 제13조제18호

제출을 의무화하려는 개정안은 비재무적 정보의 공시를 확대하고 있는 국제적 추세, 공시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바람직한 입법방향으로 판단됨.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첫째, 개정안에서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제출 의무대상을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어 모든 주권상장법인 등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바, 대상기업 범위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개정안을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둘째, 개정안에 따른 지속가능보고서는 “지속가능성”과 “기후”에 관한 위험 및 기회 등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여야 하는데, 개정안 제159조제2항제4호의2 및 같은 항 제4호의3에서 기후 관련 사항을 사업보고서 기재대상에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업에 대한 중복 규제로 작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금융위원회는 모든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대해 기후 외의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를 기재해야 하는 지속가능보고서 제출 의무 부과는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국내외의 공시제도 도입 및 이행현황을 지켜보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²⁶⁾

26) 현재 금융위원회가 마련 중인 공시기준 초안도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된 기후 분야에 한정되어 있다는 입장임.

3. 기후변화 대응계획 등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 의무화 등

- 개정안은 주권상장법인으로 하여금 법인의 이익과 탄소 중립에 관한 원칙에 부합하도록 기후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후전략·온실가스 감축목표·기후변화 대응계획·온실가스 감축전략 등에 관하여 주기적으로 정기 주주총회에서 결의하도록 하며, 해당 안건이 부결될 경우 이에 대한 이행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공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5조의21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165조의21(기후변화 대응계획 등) ① 주권상장법인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이하 “기후전략”이라 한다)을 해당 법인의 이익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조의 탄소 중립에 관한 기본원칙에 부합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은 종속회사의 기후전략에 대한 사항을 포함한다. ② 주권상장법인은 제1항에 따른 기후전략의 수립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마다 정기 주주총회에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결의하여야 한다. 1. 기후전략: 3년. 다만, 기후전략에 중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

현행	개정안
	<u>내 정기총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u> 2. <u>기후전략에 따른 온실가스의 감축 목표, 기후변화 대응계획 및 온실가스 감축 전략의 이행: 1년</u> ③ <u>정기 주주총회에서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안건이 부결되는 경우 이사회는 기후전략, 기후변화 대응계획 및 온실가스의 감축목표에 대한 이행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6개월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u>

□ “Say on Climate”(이하 “세이온클라이밋”)은 회사가 기후 대응계획이나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을 수립하고, 이를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주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임.²⁷⁾

○ 최근 유럽이나 호주를 중심으로 기업들이 자발적 또는 주주제안을 통하여 세이온클라이밋을 시행하는 사례²⁸⁾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27) 노종화·이승희, “Say on Climate 현황과 국내 도입 방안”, 「경제개혁리포트」, 경제개혁연대, 2023. 9.

28) 스페인 아에나(AENA)사가 세계 최초로 주주제안을 통해 도입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짐.

[표2] 세이온클라이밋 시행 사례

구분	사례
이사회 의 자발적 시행	○ 영국 전력 및 가스회사 네셔널 그리드(National Grid plc) - 2021년 정기주총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권고적 안건으로 상정하고, 회사의 기후전략과 이행상황을 차기 주총부터 표결에 부치겠다고 선언 - 2022년 정기주총에서 계획·조치 등을 포함한 기후 전환 계획을 상정(권고적 표결) - 2023년에는 중대한 변경사항이 없다는 이유로 미상정 ○ 캐나다 국영철도회사(Canadian National Railway Company) - 2021년 정기주총에서 회사의 기후 행동 계획을 상정(권고적 표결) - 이후 매년 정기주총에서 이행현황과 전략 등을 보고 후 권고적 표결
정관을 통한 시행	○ 스페인 공항공사 아에나(Aena) - 2020년 정기주총에서 주주제안을 통해 기후전략, 기후전환계획, 기후전환보고서 상정(권고적 표결) 등 세이온클라이밋을 정관상 의무로 명시하는 내용을 제안

(자료: 경제개혁연대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 2022년 스위스는 비재무적보고서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23년 프랑스에서도 세이온클라이밋의 입법화를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되었음.²⁹⁾³⁰⁾
- 또한, 실제 기업이 자발적으로 세이온클라이밋을 주주총회에 직접 상정한 사례로 영국, 프랑스, 호주, 스위스, 스페인, 미국, 캐나다, 남아공, 노르웨이, 아일랜드, 이탈리아 등 11개 국가 조사 결과 총 55개 기업 사례가 관측되었음.³¹⁾

29) 2023년 7월 개정안이 하원(국민의회)을 통과하였으나, 같은 해 10월 상원 논의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삭제됨.

30)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

31) 노종화·이승희, “Say on Climate 현황과 국내 도입 방안”, 「경제개혁리포트」, 경제개혁연대, 2023. 9.

- 개정안은 세이온클라이밋을 제도적으로 도입하여 기후 위기에 대한 투자자의 관여활동과 기업의 자발적변화를 유인하려는 취지로 보임.
- 다만, 「상법」 제361조³²⁾에서는 주주총회는 「상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에서 「상법」 또는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안건인 기후전략·온실가스 감축 목표·기후변화 대응계획·온실가스 감축전략 등에 대하여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도록 규정하는 것은 체계정합성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참고로, 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기되었으므로, 향후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이를 함께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임.
- 금융위원회는 외국의 경우 세이온클라이밋 제도를 법률로 강제하기보다 주주제안을 통해 일부 기업만 자율적으로 도입³³⁾하고 있고, 기후 관련 안건을 주주총회에 상정하여 찬성율이 높지 않을 경우 기업의 기후대응 노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 법무부는 주주총회 결의사항은 「상법」에 규정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32) 「상법」

제361조(총회의 권한) 주주총회는 본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

33) 프랑스의 경우에도 2023년 7월 상법 개정안이 하원은 통과하였으나, 상원 논의과정에서 해당 내용이 삭제되었음.

문 의 처
02)6788-5111